

무역상무연구
제67권
2015. 8, pp. 187~208.

논문접수일 2015. 07. 23.
심사완료일 2015. 08. 19.
게재확정일 2015. 08. 20.

한·중 FTA와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

이영수* · 권순국**

-
- I. 서론
 - II. 한·중 FTA와 중국 농식품 시장
 - III. 한국 농식품 수출의 현황
 - IV.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
 - V. 결론
-

주제어 : 한·중 FTA, 농식품 수출, 품목별 원산지기준, 뉴노멀(신창타이)

I. 서론

중국은 교역규모면에서 한국의 제1의 수출입 국가(수출비중 25.4%, 수입비중 17.1%, 2014년)¹⁾ 세계 제1의 인구대국(139,378만 명, 2014년), 경제성장률 7.7%(2014년)를 달성한 국가이다. 이러한 중국이 지금까지는 세계의 생산 공장이자 자원의 블랙홀이라 불리어졌지만, 현재는 세계최대의 소비시장, G2로 불리어질 만큼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우리나라는 2012년 FTA 1차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향후 발효가 될 경우 우리 기업이 거대시장인 중국 진출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주저자), E-Mail : lys@knu.ac.kr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빙교수(교신저자), E-Mail : kskt2@knu.ac.kr

1)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 4위 수출국(수출비중 4.2%), 1위 수입국(수입비중 9.6%)이다.

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분야는 국제경쟁력이 낮아 한·중 FTA가 한국 농업에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산물은 국제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로서 과잉생산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이 폭락하는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어 농식품의 수출확대는 국내가격을 지지하여 국내 생산기반 및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제고할 수 있으며,²⁾ 국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국내시장 방어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³⁾ 또한, 농식품 수출은 단순한 먹거리의 해외진출이 아닌 사회와 문화요인이 함께 해외로 이전되는 것으로 수출활성화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시장은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추세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교역상대국들의 수요 증가,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비교적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⁴⁾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조성제·박현희(2010)는 한국 농식품 수출을 위한 B2B e-마켓플레이스인 B2B AgroTrade의 활용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임정빈·안동환(2010)은 한국 농식품 산업의 무역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수출 활성화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선구·최용석·이광배(2013)는 농식품 수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 수출물류센터 비즈니스모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순찬·주무현·김성훈(2013)은 농식품 지원정책의 과급효과를 계량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의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정책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을 연구하였으며, 조성제·박현희(2014)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단기수출보협제도인 농수산물패키지 보험제도의 역할과 향후과제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소비시장 변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을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각종 논문,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관련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에 따르면 수출 중단시 과일·채소의 가격지수는 5.9%, 축산·낙농은 2.9%, 낙농제품은 1.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 수출로 주요 수출 농산물 재배농가 소득이 10% 내외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 2014, p. 78.
 - 3) 조성제·박현희,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과 과제: 농수산물패키지 보험 활용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4, p. 200.
 - 4) 박현희,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의 영향과 평가- 한·칠레 FTA 협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8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3, pp. 167~168.

II. 한·중 FTA와 중국 농식품 시장

1. 한·중 FTA의 의의와 농업분야 주요내용

1) 한·중 FTA의 의의

한·중 FTA는 2005년 7월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하여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 까지 1단계 협상을 통해 모델리티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합의한 후, 2013년 10월부터 2단계 협상을 시작하여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그 후 기술협외와 법률검토를 거쳐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중 FT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⁵⁾ 첫째,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013년 4.7조 달러로 2015년 5.7조 달러, 2020년 9.9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비관세장벽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게 되었다. 대중 투자확대에 따른 재중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셋째,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어 FTA 허브(Hub)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 인정과 더불어 한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역외가공 인정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하지 않는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으로 하였으며, 양허 품목 수나 범위도 포괄적이다.⁶⁾

5) 우종국,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함께하는 FTA, Vol. 31, 2014, pp. 6-7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2014, 11.

6) 기체결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방식의 경우 한·칠레 FTA는 해당 조항이 없으며(개성공단 이전 체결), 한·싱가포르, EFTA, ASEAN, 중국, 베트남 FTA의 경우는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을, 한·인도, 페루, 콜롬비아 FTA의 경우는 개성공단 한정 방식을, 한·EU, 미국, 터

2) 한·중 FTA 농업분야 주요내용

한·중 FTA는 한국이 기체결한 FTA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기회를 마련한 FTA로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의 기체결 FTA의 농수축산물 자유화율(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을 비교해보면, 한·미 FTA는 98.3/92.5%, 기체결 10개 FTA는 평균 78.1/89.0%인 것에 반해 한·중 FTA의 경우는 70/40% 정도이다(<표 1> 참조). 특히,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물식품의 대중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 한·중 FTA의 농수산물 양허수준

양허 단계	우리 양허				중국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223	9.96%	327	9.2%	283	19.3%	25	4.0%
(무관세)	102	4.6%	246	6.9%	121	8.3%	16	2.6%
(유관세)	121	5.4%	80	2.3%	162	11.1%	9	1.4%
5년	303	13.5%	16	0.5%	79	5.4%	5	0.8%
10년	176	7.9%	278	7.9%	661	45.1%	85	13.7%
(10년내)	702	31.3%	621	17.5%	1,023	69.8%	115	18.5%
15년	428	19.1%	103	2.9%	232	15.8%	74	11.9%
20년	439	19.6%	612	17.3%	105	7.2%	158	25.4%
20A	2	0.1%	28	0.8%				
20B	1	0.04%	57	1.6%				
(20년내)	1,572	70.2%	1,420	40.0%	1,360	92.8%	347	55.8%
부분감축	35	1.6%	492	13.9%	1	0.1%	19	3.1%
현행관세 +TRQ	21	0.9%	569	16.0%				
협정배제	16	0.7%	77	2.2%				
양허제외	596	26.6%	989	27.9%	104	7.1%	256	41.1%
합계	2,240	100%	3,547	100%	1,465	100%	621	100%

주: 품목수는 HS 2012 기준(한국 10단위, 중국 8단위), 수입액은 '12년 對상대국 수입액 기준.

20A: 10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1년차부터 10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 차에 무세.

20B: 12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3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 차에 무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의 경우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박정준, "FTA별 개성공단 인정 방식 이해하기", 함께하는 FTA, Vol. 34, 2015, pp. 34-35).

7)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015, 2.

한·중 FTA 협정내용 중에서 한국 농축산물의 구체적인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 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한정된 저율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s)의 제공 및 관세의 소폭 감축과 같은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였다(<표 2> 참조).

<표 2> 한·중 FTA의 우리나라 농수산물 양허 현황

품목군		주요 품목
협정제외		(16개, 0.8억불) 쌀 등
초민감 품목	양허제외	(596개, 9.9억불)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발작물(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인삼류, 과일(사과, 배, 포도,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견과류(밤, 호두, 잣, 대추, 은행), 가공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대두유, 설탕, 전분), 조기(냉동), 갈치(냉동) 등 우리나라 주요 농수산 품목
	TRQ	(21개, 5.7억불) 대두, 참깨, 팥, 고구마전분, 기타사료, 맥아,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대중 수입 품목
	부분감축	(35개, 4.9억불) 김치, 조제땅콩, 들깨, 꽃게(냉동) 등 국내 산업보호 필요 품목
민감 품목	15년 또는 20년내 철폐	(870개, 7.99억불) 산동물(말, 양), 육고기(거위, 기니아새), 가공식품(토마토케첩), 맥주, 연육 등 장기간 보호 필요 품목
일반 품목	즉시철폐, 5년내, 10년내 철폐	(21개, 5.7억불) 박류, 수수, 사료, 모류, 치어 등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서 즉시 철폐가 가능하거나 단기간 보호 가능 품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2. 중국 농식품시장

1) 농식품 시장규모

중국의 농식품 소비는 소득증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3년 기준 6.18조 위안(약 1,100조 원)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시장 규모는 2000년 이후 약 5.1배 늘어나 동기간 약 2.4배 성장한 농촌지역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향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매력이 높

은 중산층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식품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도시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도 식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중산층 가구의 증가로 농식품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3> 참조).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최근 중국 내륙지역의 소득증가로 1선도시를 포함한 동부해안에 집중되었던 구매력이 중서부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리적 차원의 시장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⁸⁾

〈표 3〉 중국 도시가구의 식품소비 지출액

(단위: 1인당 위안, %)

소득분위	1분위 (최하위)	2분위 (중하위)	3분위 (중위)	4분위 (중상위)	5분위 (최상위)
2007	2,178	2,943	3,538	4,230	5,751
2008	2,514	3,429	4,181	5,044	6,981
2009	2,652	3,640	4,410	5,367	7,248
2010	2,866	3,946	4,774	5,710	7,646
2011	3,332	4,536	5,467	6,515	8,736
2012	3,729	5,029	6,061	7,102	9,442
연평균 증가율	(14.0)	(13.6)	(13.5)	(12.9)	(12.1)
증감액	〈1,551〉	〈2,086〉	〈2,523〉	〈2,873〉	〈3,691〉

자료: 중국통계연감, 장혜선·서은영(2014) 재인용.

2) 농식품 수입현황

중국의 농식품 수입은 2013년 기준 975.7억 달러로 총수입의 5.03% 차지하였다.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은 2010년 5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13년 975.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연평균 20.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6.8억 달러로 점유율 0.7%를 기록하였으나 對세계 농식품 수입 증가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8) 정혜선·서은영, “가열되는 중국 농식품 시장, 한·중 FTA로 공략하라”, Trade Focus Vol.13, No.4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pp. 2~4.

<표 4> 중국의 농식품 수입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7~’13)
對세계 농식품 수입액(a)	319.2 -	487.7 (52.8)	444.9 (-8.8)	588.7 (32.3)	743.7 (26.3)	890.5 (19.7)	975.7 (9.6)	20.5
對韓 농식품 수입액(b)	2.8 -	3.1 (10.1)	2.9 (-5.5)	4.0 (35.0)	6.0 (51.5)	5.8 (-3.2)	6.8 (16.2)	15.7
총 수입액(c)	9,562.6 -	11,314.7 (18.3)	10,038.9 (-11.3)	13,939.1 (38.9)	17,416.2 (24.9)	18,173.4 (4.3)	19,414.7 (6.8)	12.5
비중(a/c)	3.34	4.31	4.43	4.22	4.27	4.90	5.03	-
對韓 비중(b/a)	0.88	0.64	0.65	0.68	0.81	0.65	0.70	-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해관총서, 장혜선·서은영(2014) 재인용

국가별 수입동향은 대두 수출국인 브라질,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유럽(독일, 네덜란드)과 관세혜택을 얻고 있는 중국의 FTA 체결국⁹⁾(뉴질랜드, 아세안, 페루, 칠레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많았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 혜택을 바탕으로 2008년 11위에서 2013년 4위로 점유율이 확대되었다.¹⁰⁾

Ⅲ. 한국 농식품 수출의 현황

1. 농식품 수출의 현황

2014년 한국의 농식품 수출 금액은 6,186백만 달러로 2013년 대비 8.1% 증가하였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이 2013년 대비 11.4% 증가한 5,064백만 달러였고, 신선농산물은 4.9% 감소한 1,12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물량

9) 중국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발효 12건(홍콩, 마카오,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타결 2건(한국, 호주 등), 협상중 5건(GCC, 노르웨이, SACU, 한중일, RCEP 등), 공동연구 1건(인도) 등이다.

10) 장혜선·서은영, 전계자료, pp. 11~13.

은 2013년 대비 14.5% 증가하였으나,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오히려 4.9% 감소한 수치이다.

〈표 5〉 농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335.9	5,724.6	3,606.5	6,186.4	8.1	8.1
〈신선농산물〉	366.2	1,180.5	419.2	1,122.8	14.5	△4.9
채소류	57.0	220.3	102.0	230.0	78.9	4.4
김 치	25.6	89.3	24.7	84.0	△3.5	△5.9
인삼류	5.1	174.9	5.8	183.9	14.1	5.2
화훼류	7.9	61.2	5.3	40.6	△33.3	△33.7
과실류	140.1	233.4	150.7	259.5	7.6	11.2
버섯류	16.3	38.0	15.4	36.9	△5.7	△2.8
돼지고기	1.9	4.8	1.9	7.8	0.2	64.8
가금육류	33.6	42.2	21.0	34.8	△37.6	△17.7
산림부산물	78.7	316.4	92.4	245.3	17.4	△22.5
〈가공식품〉	2,969.7	4,544.1	3,187.3	5,063.6	7.3	11.4
면 류	95.0	320.8	96.5	320.3	1.6	△0.2
소스류	64.3	181.0	68.7	187.5	6.8	3.6
주 류	423.8	385.5	439.6	404.3	3.7	4.9
과자류	122.9	434.0	125.8	490.3	2.3	13.0
연초류	44.7	553.2	57.5	702.4	28.6	27.0
유제품	30.9	123.3	38.1	157.2	23.2	27.5
목재류	564.2	231.5	600.2	243.5	6.4	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그리고 2014년 농식품의 중국 수출 금액은 987백만 달러로 2013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이 2013년 대비 7.5% 증가한 826백만 달러였고, 신선농산물은 10.2% 감소한 16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유제품, 주류, 과자류 등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표 6> 농식품 부류별 중국 수출실적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757.8	947.5	807.6	987.2	6.6	4.2
<신선농산물>	67.4	179.4	76.5	161.0	13.4	△10.2
채소류	1.6	11.9	1.1	11.3	△30.7	△5.4
김 치	0.0	0.0	0.0	0.0	0.0	0.0
인삼류	1.4	39.1	1.5	36.9	8.5	△5.6
화훼류	1.6	11.0	0.8	7.0	△49.5	△36.2
과실류	30.0	51.3	34.9	60.5	16.2	17.9
버섯류	0.2	0.3	0.0	0.0	△88.2	△84.8
돼지고기	0.1	1.0	0.2	1.2	30.4	28.1
가금육류	0.0	0.0	0.0	0.1	640.1	740.0
산림부산물	32.5	64.8	38.0	44.0	16.9	△32.1
<가공식품>	690.4	768.1	731.1	826.2	5.9	7.5
면 류	6.7	45.2	8.2	46.7	22.4	3.4
소스류	6.6	30.2	9.1	32.0	37.9	5.7
주 류	23.0	22.6	30.2	28.6	31.8	26.4
과자류	10.1	99.1	14.1	123.0	39.1	24.2
연초류	0.7	17.8	0.6	9.2	△15.5	△48.6
유제품	11.6	71.5	16.3	97.8	41.0	36.8
목재류	310.3	62.6	360.7	63.2	16.2	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5)

2. 농식품의 FTA 활용률

2013년 한국 농식품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보면, 수입이 약 63%인 반면에 수출은 약 17%에 불과해 수출입 간 활용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2012년 51%에서 2013년 63%로 12% 증가하였으나, 수출의 경우는 13.9%에서 17.1%로 3.2%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체결 FTA별로는 수입의 경우 인도, 터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50%이상의 활용률을 보였으며, 수출의 경우 EFTA, EU, 미국 등과의 FTA에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표 7> 기체결 FTA별 농식품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		수출	
	2012	2013	2012	2013
한·칠레	88.3	94.3	25.2	27.7
한·싱가포르	6.2	8.4	0.0	0.0
한·EFTA	73.2	78.8	50.6	46.1
한·아세안	58.7	57.0	3.1	3.1
한·인도	23.5	22.6	0.5	0.3
한·EU	57.7	64.1	43.2	43.3
한·페루	90.8	92.8	52.7	9.3
한·미국	44.5	71.5	26.1	36.7
한·터키	-	21.4	-	10.2
계	51.0	63.1	13.9	17.1

자료: 서진교 외(2014)

기체결 FTA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측면에서 미국과 아세안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가운데 아세안과 미국의 비중이 전체 84%에 이르고 있으며,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수출비중도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향후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 농식품의 수출을 늘리는 FTA 특혜관세 활용 모델의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여 FTA 효과를 향유하여야 한다.

<표 8> 2013년 FTA별 농식품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천 달러, %)

FTA	전체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한·칠레	5,024	0.3	1,390	0.5	27.7
한·싱가포르	104,945	5.9	0	0.0	0.0
한·EFTA	6,472	0.4	2,984	1.0	46.1
한·아세안	939,215	52.4	29,525	9.6	3.1
한·인도	11,448	0.6	38	0.0	0.3
한·EU	144,393	8.1	62,532	20.3	43.3
한·페루	845	0.0	79	0.0	9.3
한·미국	571,773	31.9	209,961	68.3	36.7
한·터키	8,287	0.5	849	0.3	10.2
계	1,792,402	100.0	307,357	100.0	17.1

자료: 서진교 외(2014)

11) 서진교 외,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pp. 5~7.

12) 상계자료, pp. 7~8.

IV.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

1. 중국 농식품 소비시장의 변화

중국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식품관련 안전사고로 인해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표 9> 중국의 식품안전사고 발생 일지

연도	해당 식품	주요 내용
2008	멜라닌 분유	이리(伊利), 멩니우(蒙牛) 등 중국 기업의 분유를 먹고 신생아 6명 사망
2011	염색만두	상하이에서 백색 밀가루에 색소를 섞어 옥수수 만두로 속여 판매
	살충제 요구르트	요구르트에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해 이를 음용한 소비자가 사망
	가짜 돼지고기	마트에서 증서를 위조해 가짜 친환경 돼지고기를 판매
	수단홍 첨가식품	샤브샤브, 고추가루,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색을 강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
	인조계란	색소 등 화학물질로 제조한 인조계란 유통(2007-2011년 5건 보도)
2012	염소첨가 탄산음료	염소 표준 함량을 초과한 유명 탄산음료가 시장에서 유통
	중금속 오염식품	수돗물, 버블티, 돼지고기 등에서 중금속 검출
	공업용 젤라틴 약용캡슐	식이 불가능한 공업용 젤라틴으로 만든 약용 캡슐 발견: 떠먹는 요구르트, 과일젤리, 캔디 등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심이 커짐
	공업용 소금간장	공업용 소금을 사용해 만든 간장이 광동성 포산(佛山)에서 발견: 해당 제조공장은 연간 약 100만병의 각종 간장과 식초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디클로르보스 (DDVP) 식품	DDVP는 무색액체의 살충제로서 독성이 강해 생강 등 일부 식품에 직접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농가에서 이를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됨, 이를 과다복용할 경우 실명, 구토현상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클렌뷰터를 돼지고기	클렌뷰터론은 돼지고기의 지방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이 섭취할 경우 사지가 무기력해지고, 심장약화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2013	변질된 과일주스	중국 내 농축 과일주스의 3대 회사들이 변질된 과일로 주스를 제조
	가짜 쇠고기	돼지고기에 색소와 공업용 파라핀 등을 첨가해 가짜 쇠고기로 둔갑시켜 판매
	가짜 식용유	인터넷으로 쓰레기 식용유 제조과정 공개, 중국정부에서 3,200톤 압수
2014	부패고기 파문	곰팡이가 핀 햄버거용 쇠고기를 새것과 섞어 유명 패스트 푸드점에 납품

자료: 장혜선·서은영(2014)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이 인기를 끌면서 주요 쇼핑몰을 통해 가공식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우유, 분유 등 안전성이 중시되는 품목의 수입상품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¹³⁾

그리고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와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自制食品’(DIY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는 2015년 기준 3,000여 종류가 넘는 DIY 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自制食品’을 검색할 경우 5,500여 개가 넘는 제품이 검색되고 있다.¹⁴⁾

2.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

1) 정부의 정책

(1)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 정비

한국 농식품 수출관련 지원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심이 되어 수출물류비지원과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는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경우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후자는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수출보험 지원, 선도유지제 이용지원,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 물류효율화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FTA와 관련된 지원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FTA 활용 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FTA 활용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어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할 경우 농식품의 수출관련 지원과 FTA 관련 업무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차이나데스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2)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식품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동 분야와 관련된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으로는 중문라벨 부착, 보건(기능)식품의 위생허가, 서류부담(위생증명서, 통관서류), 유제품 생산 등록제,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의 등록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중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여야 한다.

13) 정혜선·서은영, 전계자료, p. 6.

14) 강민주, “中, 온라인 DIY 식품 인기의 양면”, KOTRA Globalwindow, 2015, 5.

<표 10> 중국의 식품관련 주요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주요 애로사항	세부내용
중문라벨 부착	- 2011.4월부터 모든 수입포장식품에 라벨 부착 의무화(중문 간자) - 일부 해관에서는 라벨스티커 부착을 금지(포장지에 직접 인쇄 요구) - 식품명, 원산지, 분할포장여부, 내용량,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명시 - 질병예방이나 치료작용 등을 암시/명시하는 문구는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여 주의가 필요
보건(기능) 식품 위생허가	- 특수영양식품이나 보건식품의 경우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 리총국(CFDA) 인증 취득 필수 (5년 미만의 인삼은 인증 불필요)
서류부담	- 중국은 수출당국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와는 별도로 중국 내에서 발급된 위생증명서를 요구 - 통관 검역을 위해 기본 14종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검역조건이 품목별로 상이하여 해당 검역조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야함
유제품 생산 등록제	-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 - 검역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검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수출 불가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 육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야 수출이 가능

주: 14종 서류(무역계약서, 포장명세서 등 기본 서류 외 원문라벨 및 번역본, 중문라벨, 라벨에 명시된 수입상, 유통상, 대리상의 영업허가증 등 제출<북경기준>).

자료: 장혜선·서은영(2014)

(3) 농공상 융합형 수출 중소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2010년 양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¹⁵⁾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이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식품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농림수산업과 여타 산업 간 융합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농림수산업(1차 산업)과 제조업(2차 산업) 및 서비스업(3차 산업) 간 융합을 통한 6차 산업화¹⁶⁾를 통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4년 12월 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300개의 농공상

15)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등이 제휴하여 신상품이나 신서비스 개발 등을 실현함으로써 고부가가치형 신사업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 기업형태를 말한다(양현봉,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육성과제”,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07호, 산업연구원, 2015, p. 2).

16) 6차 산업화에 대해서는 이영수·권순국, “FTA시대 말산업의 6차 산업화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6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pp. 335~340 참조

융합형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3)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들 기업은 상품화 개발 지원, 자금조달 부진, 시장개척 부진, 시설확충 지연,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공적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공상 융합 추진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의 마련,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제의 구축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¹⁷⁾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외국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확대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중국기업과 중국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구축은 시의적절하다. 동 클러스터는 한국의 우수한 원료 농산물을 바탕으로 IT, BT 등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 해외 시장정보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과 더불어 해외 기업들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FIZ: Foreign Investment Zone)을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주지점할 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예정인 국내외 식품기업과 국내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투자유치, 수출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1>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기업

식 품 기 업		생산자단체
(주)하림 (한국)	- 매출액 : 8,000억원(2013) - 투자계획 : 삼계탕(닭고기 + 인삼) 수출, 종합식품으로 사업다각화 - 투자 MOU : 2011. 7 (330,000㎡)	전북 인삼농협
차오마마 (중국)	- 매출액 : 800억원(2013) - 투자계획 : 국내산 과일로 푸딩류 제조, 중국 역수출 - 투자 MOU : 2014. 8 (33,000㎡, 5백만불, 고용 100여명)	한국 과수농협 연합회
햄튼 그레인즈 (미국)	- 매출액 : 1,000억원(2013) - 투자계획 : 국산 현미를 가공하여, 미·중국 수출 - 투자 MOU : 2014. 5 (16,500㎡, 6백만불, 고용 40여명)	한국 RPC협회

자료: 농림축산부(2014)

17) 양현봉, 전개자료, pp. 2~8.

최근에 중국 BGX그룹(강소유향물류발전유한회사)이 한국의 고품질 원료 농산물로 가공한 안전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 가공 시설 및 냉장·냉동물류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¹⁸⁾

따라서 향후 중국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FTA 허브인 한국의 지리적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의 전략

(1) 지역별 마케팅 전략 수립

광대한 중국시장에서 한국 농식품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권역별¹⁹⁾, 도시별²⁰⁾로 시장특징, 소비성향, 유통채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품목발굴과 유통채널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경쟁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한국 농식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Identity)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 농식품에 대한 중국 주요 소비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선식품의 경우 중국 소비자의 신선 및 안전에 대한 기대이미지에 비해 한국 농식품의 이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가공식품의 이미지 역시 중국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며, 미국산에 대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18)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국 BGX그룹과 투자 양해각서 체결”, 2015, 3. 31.

19) 권역별 주요도시는 화동(상하이, 장쑤, 저장 등), 환발해(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화남(푸젠, 광둥, 하이난 등), 산둥(산둥), 중부(산시<山西>,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동북(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서남(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베트 등), 서북지역(네이멍구, 산시<陝西>,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 중국은 도시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규모(인구, 면적 등), 영향력, 지명도 등을 바탕으로 전국 도시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 1인당 GDP 1만 달러를 넘는 도시를 1선 도시라하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선 도시에는 난징(南京), 옌타이(烟台), 우시(无錫), 칭다오(青島), 난닝(南宁), 지난(濟南), 둥관(東莞), 푸저우(福州),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바오터우(包頭), 청두(成都), 충칭(重慶), 다롄(大連), 둥잉(東營), 포산(佛山), 허페이(合肥), 닝보(宁波), 진황다오(秦皇島), 스자좡(石家莊), 타이위안(太原), 탕산(唐山), 우한(武漢), 정저우(鄭州) 등이 속하며, 3선 도시에는 난통(南通), 웨이하이(威海), 즈머(淄博), 웨이팡(濰坊), 샹탄(湘潭), 하이커우(海口), 한단(邯鄲), 윈저우(溫州), 중산(中山), 양저우(揚州), 바오딩(保定), 빈저우(濱州), 다통(大同), 지우장(九江), 뤼양(洛陽), 사오싱(紹興), 싱타이(邢台) 등이 속하며, 4선 도시에는 화이화(怀化), 서우광(壽光), 위타오(余姚), 쑤저우(宿州), 주지(諸暨), 푸양(阜陽), 황화(黃驛), 스옌(十堰), 창수(常熟), 지에슈(介休), 뤼허(漯河), 피저우(邳州), 윈딩(文登), 쉬안청(宣城), 저우산(舟山) 등이 속한다.

21) 한국 농식품의 주요 소비지역인 북경, 상해, 광주, 청도 등 중국 4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25세~59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식료품 구입을 하며, 수입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가구소득이 중국 전체 상위 10% 수준에 근접하는 15만 위안으로 제한하였다(단, 청도의 경우 지역소득수준을 고려하여 10만위안 이상으로 제한).

마케팅 전략측면에서 유통채널의 경우 1선, 2선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식 소매점 (하이퍼마켓·슈퍼마켓·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유통채널 선호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탄산음료·RTD(ready to drink) 커피²²⁾와 차·생수·맥주는 식료품점을, 기저귀·분유·화장품은 전문점과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²³⁾

(2) 고품질 농식품 확보와 식품포장기술 개발

농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수요가 고품질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농식품의 발굴이 필요하며, 또한 증가하는 수출물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품질 수출품목의 안정적 물량확보는 농식품 수출에 있어 중요하며, 이는 해외바이어의 신뢰 구축에 큰 영향을 준다. 국내의 농식품 수출에 성공한 업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십 개의 생산업체와의 계약 또는 자사 직영농장 보유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선을 구축하여 바이어가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출 초기에 국내공급가격이 해외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 수출예정 물량을 국내공급으로 변환하는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므로 공급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²⁴⁾

고품질 수출품목의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식품포장기술의 개발이다. 전 세계 포장시장은 5천억 달러 정도로 이 중 식품포장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포장이 소비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식품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소비행동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친환경 포장을 사용하면 과일샐러드와 같이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더 많이 주문한다.²⁵⁾

각 도시별 700명씩 총 4개 도시 2,800명이 일대일 면접 설문 조사방법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안옥현·조우철·김창환,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한국 농식품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유통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유통과학회, 2014, pp. 8~16).

22) 글로벌 음료시장 조사업체인 영국 캐나딘(Canadean)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국 RTD 커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54억 8,700만 위안이며, 2017년에는 91억 9,300만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김화, 중국 RTD 커피시장 겨냥한 업계 거두들의 협력 움직임, KOTRA Globalwindow, 2015). 따라서 가공식품 측면에서 한국 RTD 커피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3) 한국무역협회, “중국 유통채널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방안”, 2013, pp. 20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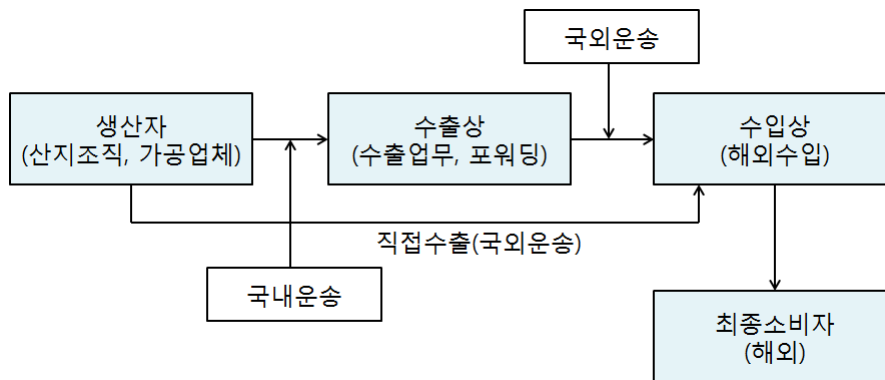
24) 강승관, “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 Trade Focus Vol.11, No.4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 p.15.

25)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포럼 성공적 개최”, 2014, 11. 18.

(3) 농식품 수출물류센터 구축

일반적으로 농식품의 수출유통 경로는 다수의 생산자, 수출상, 해외수입상과 최종소비자라는 다양한 채널과 구성원들로 구성되며, 상품의 특성상 농식품 수출물류센터²⁶⁾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동 센터는 농산물 및 농식품의 국제교역에 수출업의 본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농식품 수출의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 구축 및 농식품 유통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과정의 공급망관리(SCM)를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관리 시스템²⁷⁾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필요하다.²⁸⁾ 그리고 농식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부패와 변질, 손실을 최소화하는 저온유통 시스템(Cold Chain System)의 구축 역시 중요하다.

<그림 1> 농식품 수출물류체계



자료: 김선구 외(2013)

- 26) 농식품 수출물류센터는 농식품 생산자로부터 농식품을 공급받아 보관, 가공, 포장, 컨테이너 작업, 재고관리, 포워딩, 통관 및 세관업무, 물류정보 관리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브랜드화 및 제품화하여 적재적소에 배송하기 위한 통합된 시설이다(김선구·최용석·이광배, “농식품 수출물류센터 비즈니스모델 구축 방안”, 한국향만경제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향만경제학회, 2013, p. 62).
- 27) 농산물 공급사슬관리란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자의 소비행위까지 전체 유통과정과 참여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산, 수·발주, 거래(구매, 판매, 가격형성 등), 물류(저장, 운송 등), 정보의 소유와 교환 등 모든 상적·물적 기능들이 특정 참여주체나 특정 유통단계별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사슬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다(전창곤 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망관리(SCM)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p. 29).
- 28) 김선구·최용석·이광배, 전제논문, pp. 63-68.

(4) FTA 특혜관세 활용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이 고품질이면서 이와 더불어 가격경쟁력을 갖출 경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농식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²⁹⁾을 충족시켜야 하며,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³⁰⁾

한·중 FTA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5,205개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했으며, 신선농수산물(1류~14류)은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물(15류~24류)은 수출가능성을 반영한 세번변경기준으로 정했다. 현재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이용률이 낮았으나,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³¹⁾ 하였으므로 향후 농산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농식품 관련기업의 FTA활용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일명 FTA Agri)’³²⁾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은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어민, 이를 유통 및 가공하는 업체, 수출하는 무역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좀더 쉽게 원산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9) 원산지규정은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전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후자는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통상 별표로 규정된다(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3, p. 14).

30) FTA 원산지증명 위반 등으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보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pp. 493~518 참조

31) 관세청, “원산지 증명 간소화로 농산물 수출지원”, 2015, 3. 5.

32) 업종별로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화학, 섬유, 철강, 농수산식품 분야가 그 대상이 되었는데 화학과 철강은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섬유의 경우는 관세청의 FTA-PASS에 특화시스템이 있다. 농수산식품 분야가 취약하여 기존 시스템인 ‘FTA-코리아(FTA-Korea)’를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개발을 담당하여 보급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 Vol. 33, 2015, pp. 28~29).

V. 결 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하에 한국의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은 2.9% 증가하여 전체 수출증가율(-5.7%)을 상회하였으며, 가공식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77%에서 동 기간은 0.82%로 상승하였다.³³⁾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시장은 한국 농식품 수출에 있어 커다란 기회이자 전체 수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소비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구매력 확대와 고품질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확대는 한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수출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정책으로는 첫째, 농식품의 수출관련 지원과 FTA 관련 업무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공상 융합형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내수기업 육성과 더불어 한·중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기업과 중국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의 전략으로는 첫째, 광대한 중국시장을 권역별, 도시별로 시장특징, 소비성향, 유통채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품목발굴 및 유통채널 접근 전략과 더불어 한국 농식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고품질 수출품목의 안정적 물량확보와 상품가치의 증진과 판매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식품포장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농식품 수출업의 본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신뢰도 및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농식품 유통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물류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TA 발효에 따른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품목별, 권역별(도시별)로 모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33) 박승, “최근 K-Food 수출동향과 시사점”, Trade Brief No.3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p.1.

참 고 문 헌

- 강민주, 中, 온라인 DIY 식품 인기의 양면, KOTRA Globalwindow, 2015, 5.
- 강승관, “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 Trade Focus Vol.11, No.4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
- 김선구·최용석·이광배, “농식품 수출물류센터 비즈니스모델 구축 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 김주원, “효과적 한·중 FTA체결을 위한 중국의 협상문화와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 김 화, “중국 RTD 커피시장 겨냥한 업계 거두들의 협력 움직임”, KOTRA Global window, 2015.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국 BGX그룹과 투자 양해각서 체결, 2015, 3.
- 박 솔, “최근 K-Food 수출동향과 시사점”, Trade Brief No.3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 박순찬·주무현·김성훈,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 2013.
- 박정준, “FTA별 개성공단 인정 방식 이해하기”, 함께하는 FTA, Vol. 34, 2015.
- 박현희,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의 영향과 평가- 한·칠레 FTA 협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8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3.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015.
- 서진교·박지현·이준원·신민금,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송수련, “중국 《무역백서(中國的對外貿易)》의 주요내용 및 한국기업의 대응책”, 무역상무연구 제6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 안육현·조우철·김창환,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한국 농식품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유통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유통과학회, 2014.
- 양현봉,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육성과제”,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07호, 산업연구원, 2015.
- 우종국,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함께하는 FTA, Vol. 31, 2014.
-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3.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

-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_____, “FTA시대 말산업의 6차 산업화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6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 임정빈 · 안동환, “농식품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식품유통학회, 2010.
- 전창곤 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망관리(SCM)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정혜선 · 서은영, “가열되는 중국 농식품 시장, 한·중 FTA로 공략하라”, *Trade Focus* Vol.13, No.4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 조성제 · 박현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과 과제: 농수산물패키지 보험 활용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2014.
- 한국무역협회, 중국 유통채널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방안, 2013.
- Cadot, O. et al.,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Huang, J., Yang, J. and Rozelle, S., “Changing Food Consumption Pattern and Demand for Agri-Based Industrial Products in China: Implication for Southeast Asia’s Agricultural Trade”, *Rural review*, Vol. 38 No. 1, 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2011.
- Inama, 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Liapis, P., “Agricultural Specific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An Overview”,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74, OECD, 2015.
- Maertens, M and J. Swinnen, “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ment: A Value Chain Perspective”, *WTO Working Paper*, ERS-2015-04, WTO, 2014.
- Sébastien J and Jean-Christophe Bureau, “Do Regional Trade Agreements Really Boost Trade?: Estim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CEPII Working Paper*, No. 2015-09, CEPII, 2015.
- Stringer, C., Le Heron, R. B., *Agri-Food Commodity Chains and Globalising Networks*, Ashgate, 2008.

ABSTRACT

The Korea · China FTA and the Export Promotion Strategies for Korean Agri-Food to China

Young-Soo LEE · Soon-Koog KWON

The Korea · China FTA was signed on June 1 2015. It includes some concessions regarding major export item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the protection of primary industries and preferential tariffs for a number of products produc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imary industries are w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he greatest attention to. Rice was excluded from the negotiations from the get go, and was joined by 548 other food items including pork, apples, pears, beef, chili, garlic etc. These foodstuffs account for about one-third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hat Korea produces, and are not going to be subject to tariff elimi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Korean government policy is to maintain of agri-food export support system, eliminate of agri-food non-tariff barriers, foster of agri-food export SMEs and expand of investment of foreign agri-food company. Korean firms strategy is to establish of regional marketing strategy, ensure of high quality agri-food and develop of food packaging technologies, establish of agri-food export logistics center and take advantage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

Keywords : Korea · China FTA, Agri-Food Export, Product Specific Rules, New Normal(新常態)